

성년후견제도 운영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 후견법인의 역할의 정립: 일본 지타(知多) 지역 모델의 시사점*

제 철 응**·김 원 태***

차 례

I. 서론

II.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근거와 방법

1. 성년후견제도 이용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2.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심판청구에 관여하게 되는 근거 법률
3.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의 내용
4. 성년후견제도법인후견지원사업
5. 소결

III. 지타 지역의 후견법인인 성년후견지원센터의 활동과 시사점

1. 지방자치단체와 성년후견지원센터의 관계
2.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지타지역 성년후견센터’의 활동
3. 소결: 시사점

IV. 결론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SSK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연구사업 (NRF-2013S1A3A2043353)의 지원으로 연구되었다. 이 보고서에 인용된 知多地域成年後見利用促進事業 관련자료와 NPO 法人 知多地域成年後見センタ 内부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인터뷰에 응해준 東海市 사회복지과장 神野規男씨와 NPO 법인 사무국장 今井友乃 씨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 제1저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제2저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접수일자 : 2016. 4. 22. / 심사일자 : 2016. 5. 26. / 개재확정일자 : 2016. 5. 30.

I. 서론

1.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년보호를 위해서도 후견 관련 심판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¹⁾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후견 관련 사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권행사의 제한과 친권 상실을 청구하는 것(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을 위한 후견인의 선임과 해임 신청권한을 보유하는 것(아동복지법 제13조)에 국한되어 있었다. 동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친권상실, 후견인 선임 및 해임청구는 가사비송 라류 사건으로 다루어졌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2항, 제3항).²⁾ 그런데 위 법률 제10429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성년 및 미성년 후견심판 사건에서의 청구권한을 전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에 따라 신청한 후견 관련 신청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 목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취급된다.

위 민법개정에 따라 후견 관련 사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확대 이후, 가사사건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권한은 2014년 10월 15일 법률 제12777호로 친권자의 지정(민법 제909조의2),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의 청구(제922조의2), 친권상실 및 일시정지(민법 제924조), 친권의 일부제한(제924조의2),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제925조) 등으로 확대되었다. 종래 가족문제라 여겨졌던 미성년, 성년의 보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깊숙이 개입 할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 점에서 보면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가 적어도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전기(轉機)였다고 할 것이다.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1) 물론 위 법률로 미성년을 위한 후견심판 사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심판청구권한을 부여하였다(민법 제932조 참조). 그런데 여기서는 성년을 위한 후견심판 사건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민법에 따른 친권의 제한과 상실은 가사비송 마류 사건이며(2013년 7월 1일 이전의 가사소송법 제2조 제2호 나목 6번 참조) 및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인은 법률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취임하는 것이 원칙이었고(2013년 7월 1일 이전의 민법 제931조, 제932조 참조), 당시 민법 제936조에 따라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후견 선임신청은 가사비송 라류사건이었다(2013년 7월 1일 이전의 가사소송법 제2조 제2호 가목 18번 참조).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신청권자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포함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며, 그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신청권자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포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권한 행사를 보다 전문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것이다.

2.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에 의해 성인을 위한 후견 사건에서 심판청구권한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그 권한행사를 뒷받침하는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618호로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에서는 후견 사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사건에서의 역할

발달장애인법 근거 규정	내용
법 제9조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p> <p>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p> <p>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제22조 (계좌 관리의 점검 등)	<p>① ~ ② 생략</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금으로 지급된 복지지원이 발달장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계좌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법 제34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임무)	<p>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6. 생략</p> <p>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p> <p>8~9. 생략</p> <p>② 지역발달장애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7. 생략</p> <p>8.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p> <p>9. ~10. 생략</p>
시행령 제3조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p>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p> <p>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 등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2. 후견법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견기간 동안 후견법인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사람</p>
시행규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제9조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후견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조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다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친족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에 따른 후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영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비용 후견법인이 지원과 감독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과 감독에 드는 비용

발달장애인의 경우 위 '발달장애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 사건과 관련하여 행사할 권한의 내용과 권한행사의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시행 이전에도 동법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에 따른 후견신청 건수는 아래 <표 2>, <표 3>과 같다.

<표 2> 공공후견지원사업 청구 실적(13.9.1~15.6.30) (단위: 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합계
청구건수	-	1	364	-	36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5)

<표 3> 2015년 후견심판청구 사건(2015.1.1.~2015.12.31.)

특정후견심판 청구	사전처분신청	변경청구 (후견인,후견감독인,대리권범위 등)	합계
69건	26건	11건	106건

자료: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부 자료(2015년)

그동안 공공후견사업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받게 한 후, 구체적인 후견사건이 있을 때 그들 중에서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런 방식으로 양성된 공공후견인의 수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실적(13.7.1~14.11.30)

(단위:명)

기관	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 자폐인사랑협회 컨소시엄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우권익문제연구소 컨소시엄	합계
인원	755	836	1,591

자료: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부 자료(2015년)

아래 <표 5>의 후견인 선임 유형 중 특정후견인 중 기타에 해당되는 사람의 대부분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양성된 시민공공후견인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표 5> 유형별 성년후견인 선임 건수

년도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		
	친족	전문	기타	친족	전문	기타	친족	전문	기타	친족	전문	기타
2013년	434	20	6	59	3	0	8	5	27	0	0	1
2014년	1131	45	18	138	7	4	125	22	198	1	0	1
2015년	1542	48	23	182	7	3	114	20	224	1	0	2
합계	3107	113	47	379	17	7	247	47	449	2	0	4

출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후견사건 통계자료(비공개), 2016.

3. 위 <표 5>에서 보듯이, 이제까지 특정후견인 선임건수가 한정후견인 선임건수를 초과한 것이라든지, 특정후견인 중 기타가 대부분 공공후견인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인 것을 감안하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1,000명 정도의 공공후견인후보자가 양성되는데, 그 중 일부만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을 보면,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아래 <표 6>의 대법원의 성년후견 신청 관련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후견심판청구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공공후견사업으로 신청하는 특정후견신청 사건 수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 <표 2>, <표 3>에서 보듯이 2015년 공공후견 사업에 기초한 후견신청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낮은 것과도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표 6> 후견사건 접수건수(2013. 7. 1. ~ 2015. 12. 31.)

구분	2013년(7.~)	2014년	2015년	합계
성년후견	727	1,967	3,013	5,707
한정후견	116	245	276	637
특정후견	50	355	181	586
임의후견	7	8	8	23
합계	900	2,575	3,478	6,953

출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후견사건 통계자료(비공개), 2016.

위 <표 3>, <표 6>의 수치변화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공공후견인후보자 양성과 후견사건 신청 간의 연계가 높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시민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현행의 공공후견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법’은 시민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후견법인 소속 직원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민이라 하더라도 후견법인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3조).³⁾

3) 법인후견과 후견법인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철웅·김원태·이용표·이세희, 후견법인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입법적 제안, 가족법연구 제30권 제1호(2016), 173쪽 이하 참조.

동법 시행령 제3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 하에 제공되는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에 후견법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지를 검토하는 것이 불가결할 것이다. 이런 목적 하에 이 글에서는 후견법인 중심의 후견서비스 제공의 장점이 무엇인지, 후견법인은 어떻게 활동하여야 하는지를 일본 지타 지역의 후견법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법만이 아니라 치매노인이나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서비스 제공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떤 법제 정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II.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근거와 방법

1. 성년후견제도 이용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2000년 민법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이후 일본에서의 후견이용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표 7> 일본의 후견제도이용 상황의 연도별 추이

년도	누적 총 이용건수	신청건수	후견 신청 (누적 이용자)	보좌 신청 (누적 이용자)	보조 신청 (누적 이용자)	임의후견 감독인신청 (누적 이용자)
2010	140,309	30,079	24,905 (117,020)	3,375 (15,589)	1,197 (6,226)	602 (1,475)
2011	153,314	31,402	25,905 (126,765)	3,708 (17,917)	1,144 (6,930)	645 (1,702)
2012	166,289	34,689	28,472 (136,484)	4,268 (20,429)	1,264 (7,508)	685 (1,868)
2013	176,564	34,548	28,040 (143,661)	4,510 (22,841)	1,282 (8,013)	716 (1,999)
2014	184,670	34,373	27,515 (149,021)	4,806 (25,189)	1,314 (8,341)	738 (2,119)

출처: 일본 최고재판소 가정국 성년후견관계사건의 개황 2010년~2014년까지 자료
재정리

위 표를 보면, 대략 매년 3만명 정도 후견 신청이 있고, 지난 해 후견 개시된 건수 중 2/3 이하, 전체 누적건수의 약 11%가 사망 등으로 후견 종료가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일본최고재판소가정국의 성년후견관계사건의 개황 2013년 자료를 보면, 한 해 동안 선임된 후견인 중 약 57.8%가 제3자 후견인(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족 이외의 후견인을 제3자 후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된 전체 후견인 중 법률가가 39.4%, 사회복지사가 10%, 범인이 4.6%, 시민후견인이 0.5%이다. 사회복지 분야 중에 한정해서 보면 후견법인이 점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후견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관련 사건에서 후견법인의 역할도 점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래 <표 8>이 이에 관한 것이다.

<표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 청구 및 후견인 선임건수의 추이

년도	지자체 신청건수	사회 복지사	법인		시민후견인
			기타법인	사회복지협 의회	
2000	23	통계 없음	14		
2001	115	통계없음	47		
2002	258	142	62		
2003	437	313	71		
2004	509	405	98		
2005	666	580	179		
2006	1,033	902	377		
2007	1,564	1,257	417		
2008	1,876	1,639	487		
2009	2,471	2,078	682		
2010	3,108	2,553	961		
2011	3,680	2,740	782	340	92
2012	4,543	3,121	884	402	118
2013	5,046	3,332	959	560	167
2014	5,592	3,380	1,139	697	213

출처: 최고재판소가정국, 성년후견관계사건의 개황 2000~2014년 자료 재정리

위 <표 8>에서 보듯이 법인후견의 수임건수는 제3자후견인 전체에 점하는 비율은 아직 적지만, 2000년에는 한 해 13건이었던 것이 2011년도에는 한 해 1,12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⁴⁾

2.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심판청구에 관여하게 되는 근거 법률

2000년 민법개정으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민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신청(일본 민법 제7조), 보좌 신청(일본 민법 제11

4) 성년후견 총 건수 및 후견수임 비율은 2008년 총 24,964건, 친족후견 68.5%, 법인후견 1.9%, 2009년 총 25,808건, 친족후견 63.5%, 법인후견 2.6%, 2010년 총 28,606건, 친족후견 58.6%, 법인후견 3.3%이다. 特定非營利活動法人 知多地域成年後見センター, 「法人後見支援員養成モデル事業調査報告書」, 2012, 5면; 特定非營利活動法人 知多地域成年後見センター, 「知多地域成年後見センターに見る地域に根じた法人後見のあり方」, 2013, 5면. 수임건수 등의 수치는,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 「성년후견관계사건의 개황」 2008년, 2009년, 2010년 참조.

조), 보조신청(일본 민법 제15조)에서의 신청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대신 일본은 2000년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견, 보좌, 보조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관련 행정법률에 두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청의 권한행사의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관계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9> 노인복지법상의 후견심판청구 관련 규정

老人福祉法 제32조 (심판의 청구)

시정총장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그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법 제17조,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876조의 4 제1항 또는 제876조의9 제1항에 규정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⁵⁾

<표 10> 지적장해자복지법상의 후견심판청구 관련 규정

지적장해자(知的障害者)복지법 제28조 (심판의 청구)

시정총장은 지적장애인에 대해, 그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민법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876조의 4 제1항, 또는 제876조의9 제1항에 규정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동법 제5조의4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65세 이상의 자 (65세 미만의 자로서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사람을 실제로 양호하는 자 (이하 “양호”라한다)에 대한 제10조의4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 조치는 그 65세 이상자가 거주지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의 시정총이, 거주지를 갖고 있지 않거나 그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기의 시정총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동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또는 생활 보호법 (1950년 법률 제1044호)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입소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65세 이상의 사람이 입소 전에 거주지가 있었던 때에는 그 거주지의 시정총이, 65세 이상의 사람이 입소 전에 거주지를 갖고 있지 않거나 그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에는 입소 전에 있어서 그 65세 이상의 사람이 속한 시정총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필요하면 65세 미만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표 11>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복지법상의 후견심판청구 관련 규정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精神障害者)복지에 관한 법률 제51조의11의2 (심판의 청구)
시정총장은 정신장해인에 대해, 그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법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876조의4 제1항 또는 제876조의9 제1항에 규정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일본은 지역주민인 고령자와 장애인이 개정 민법상의 후견, 보좌, 보조 제도를 이용하여 복지수급의 원활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견신청권을 행사할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는데 특색이 있다. 민법에 관련 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행정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청구권한의 법적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심판청구권이 복지혜택의 실효성 확보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를 없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후견신청권한의 행사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작업 뿐이었을 것이다.

일본은 그 일환으로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그 사업은 고령자부터 시작하였다. 일본의 후생성은 민법 개정 직후인 2001년부터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을 임의사업으로 시행하였고, 장애인의 경우 2005년 ‘장해자(障害者)자립지원법’을 제정하면서 장해자지원사업상의 임의사업으로 도입하였다. 한편 장해자지원사업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갖추게 된 것은 2012년 장해자자립지원법 개정을 통해 장해자의 지역생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을 하도록 한 때부터였다. 그 근거가 바로 아래 <표 12>의 규정이다.

<표 12> 개정 장해자자립지원법상의 후견 관련 규정

障害者自立支援法 제77조 (시정총의 지역생활지원사업)

- ① 시정총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의2. 장해자복지서비스의 이용의 관점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장해자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에 요하는 경비에 관하여 보조를 받지 않으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년후견제도 운영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 후견법인의 역할의 정립: 일본 지타(知多) 지역 모델의 시사점

한편 일본은 2012년 사회복지행정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시민후견촉진사업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 각 표와 같다.

<표 13> 사회복지행정 관련 법률상의 시민후견추진사업 관련 규정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내용
노인복지법 제32조의2 (후견등에 관한 체제의 정비등)	① 시정촌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의 원활한 실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하는 후견, 보좌 및 보조 (이하 "후견 등"이라한다)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인재 육성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연수 실시, 후견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자의 가정법원에 추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도부현은 시정촌과 협력하여 후견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인재 육성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전항에 규정하는 조치의 실시에 관해 조언 기타 원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적장해자복지법 28조의2 (후견등에 관한 체제의 정비등)	① 시정촌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의 원활한 실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하는 후견, 보좌 및 보조 (이하 "후견 등"이라한다)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인재 육성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연수 실시, 후견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자의 가정법원에 추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도부현은 시정촌과 협력하여 후견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인재 육성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전항에 규정하는 조치의 실시에 관해 조언 기타 원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51조의11의3 (후견등을 행할 자의 추천 등)	① 시정촌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의 원활한 실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하는 후견, 보좌 및 보조 (이하 "후견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인재 육성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연수 실시, 후견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자의 가정법원에 추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도부현은 시정촌과 협력하여 후견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인재 육성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전항에 규정하는 조치의 실시에 관해 조언 기타 원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위와 같은 법률적 근거 하에 실시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 및 성년후견법인이용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3.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의 내용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은 고령자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전달의 효율화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신청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업은 치매노인 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일본의 고령자세대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은 고령 치매환자의 개호서비스(우리나라의 장기요양급여와 유사)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고령치매환자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결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은 다시 성년후견지원사업과 시민후견인추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지원사업

치매환자를 위한 성년후견지원사업의 경우, 2013년을 예를 들면, 지역지원사업⁶⁾(예산 연간 623억엔) 중 개호예방사업, 포괄적 지원사업, 개호예방·일상생활 지원종합사업, 임의사업이 있는데, 그 중 임의사업에 성년후견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성년후견지원사업은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사업(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에 해당된다.⁷⁾ 임의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성년후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실시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 때의 임의사업의 재정부담은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의 예산부담비율이 2:1:1이다. 다만, 개호급부비로 지급되는 전체 예산 액수 중 3% 이내여야 한다고 한다.⁸⁾ 성년후견지원사업(고령자)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⁹⁾

6) 일본의 경우 고령자를 위한 지역지원사업은 2005년 6월 개호보험법개정으로 2006년에 창설된 것으로, 고령자가 개호를 요하거나 지원을 요하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 개호를 요하는 상태를 경감 또는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지역에서 고령자가 자립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에 관한 간단한 개요는, 社會福祉士養成講座編輯委員會, 高齡者に對する支援と介護保険制度(第5版), 170면 참조.

7) 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위의 책, 171면 이하 참조.

<표 14> 치매환자를 위한 성년후견지원사업 세부내용¹⁰⁾

1. 사업 내용

- 시정촌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경우 국가가 교부금을 교부한다.
 - (1) 성년후견제도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보급 활동의 실시
 - ① 지역포괄지원센터, 주택개호지원사업자 등을 통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설명, 팜플렛 작성 · 배포
 - ②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설명회·상담회 개최
 - ③ 후견사무 등을 저렴하게 실시하는 단체 등의 소개 등
 - (2) 성년후견제도의 이용과 관련된 경비 지원
 - ① 대상자: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
 - (예)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족 없는 중증치매 노인
 - ② 지원대상 경비
 - 성년후견제도의 신청에 필요한 경비 (신청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 비용 등)
 - 후견인 보수의 일부 등

2. 예산: 지역지원사업 예산 623억엔 중에서 수행(2013년)

3. 참여지자체: 1,197개 시정촌이 참여(2012년 현재. 전체의 68.7%가 참여)

성년후견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지자체가 지원하는 후견인의 보수¹¹⁾ 중 얼마를 지원할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피후견인이 시설에 거주할 경우 월 18,000엔, 지역에 거주할 경우 월 28,000엔을 상한으로 한다고 한다. 요코하마 시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8) 山口理恵子, 成年後見制度利用支援事業における運用上の課題, 京都光華女子大學研究紀要47, 京都光華女子大學, 286면.

9) 상세한 것은, 社會福祉士養成講座編輯委員會, 權利擁護と成年後見制度(第4版), 140면 이하 참조.

10) 이 표는 일본 후생노동성자료인 ‘市民後見人の普及促進’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관련 자료는 http://www.cao.go.jp/consumer/iinkai/2013/118/doc/118_130423_shiryou3.pdf 참조.

11) 후견인의 보수는 민법 제862조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 즉 가정재판소는 후견인 및 피후견인의 자력 그 밖의 사정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줄 수 있다(일본 일본 민법 제862조).

<표 15> 요코하마시 성년후견지원사업 경비지원 대상자 기준

지원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후견인 · 피보좌인 · 피보조인		
• 생활보호대상자		
• 중국 잔류 일본인 등의 원활한 귀국의 촉진 및 영주 귀국 후의 자립의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지원급부를 받는 자		
• 다음의 소득, 자산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세대 인원수	수입예상액(연간)	자산기준(현금, 저금, 유가증권)
단독세대	150만엔 이하	350만엔 이하
2인 세대	200만엔 이하	450만엔 이하
3인 세대	250만엔 이하	550만엔 이하
4인 세대	250만엔 + 세대원 1인당 50만엔	550만엔+세대원 1인당 100만엔

요코하마 시는 지원상한액으로 시설입소자는 1개월 당 18,000엔, 그 외는 28,000엔으로 하고, 피성년후견인 등이 사망했을 경우 남은 유산으로 부족한 금액만큼을 지원한다고 한다.

위 표에서 보듯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피후견인, 피보좌인, 피보조인이 후견인, 보좌인, 보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지원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지원액이 월 18,000 또는 28,000엔인 셈이다.

(2) 시민후견인추진사업

한편 일본은 2012년부터 시민후견인을 양성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후견인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 표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표 16> 치매환자의 시민후견인추진사업의 내용¹²⁾

1. 목적

치매노인과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의 전문직 뿐만 아니라, 시민을 포함한 후견인(이하 "시민후견인"이라 한다)도 후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시정촌(특별구 포함)에서 시민후견인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2. 사업 내용

(1) 시민 후견인 양성을 위한 연수 실시

① 연수 대상자

시민 후견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② 연수 내용 등

시정촌은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시민후견인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능·윤리가 습득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작성한다.

(2) 시민 후견인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체제 구축

① 시민후견인의 활용 등을 위한 지역의 실태 파악

② 시민후견추진을 위한 겸�토회 등의 실시

(3) 시민 후견인의 적정한 활동을 위한 지원

① 변호사, 사법서사,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시민후견인이 어려운 사례 등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함

② 시민후견인 양성교육수료자 등의 후견인후보자 명부에 등록하게 한 후 가정법원에 통지하고, 후견인후보자 추천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구축

(4) 기타 시민 후견인 활동의 추진에 관한 사업

3. 예산·실시 상황

2011년도 예산 1.1억엔, 실시 개소 37시구 (26도도부현 2012년도 예산 2.1억엔, 실시 개소 87시구 (33도도부현)

2013년도 예산(안) 2.1억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동일한 내용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그 근거법률이 장애자자립지원법에 근거한 것이다.¹³⁾ 이를 감안하면,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이용사업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12) 이 표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市民後見人の普及促進' 자료를 재정리한 것이다. 상세한 것은 http://www.cao.go.jp/consumer/iinkai/2013/118/doc/118_130423_shiryou3.pdf 참조.

13) 장애자자립지원법에 따른 지역생활지원사업 중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 성년후견제도 법인후견지원사업이 필수사업으로 위치해 있고, 권리옹호지원으로서 성년후견제도보급계

후견심판청구와 후견인보수를 지급하며, 후견제도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 후견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의 양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과 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의 예산은 다음 <표 17>과 같다.¹⁴⁾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의 연간 예산이 16억인 것¹⁵⁾과 비교하면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은 예산의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을 알 수 있다.

<표 17> 일본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 예산 (단위: 천 엔)

	2012년	2013년	2014년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 조성액(신청비용, 보수비용)	94,714	168,971	223,768
장애인상담지원사업 성년후견지원센터 등(위탁료)	17,860,000	18,320,000	19,630,000
시민후견추진사업	210,000	210,000(안)	자료 없음

자료: 후생노동성 장애인상담지원사업 실시상황(2013년~2015년)과 내각부(2013).

4. 성년후견제도법인후견지원사업

성년후견제도법인후견지원사업은 장해자종합지원법에 의해 2013년 4월부터 시정촌의 장해자를 위한 지역생활지원사업상의 필수사업으로 자리매김된 사업이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법인후견지원사업은 국고가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은 아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아직 많지 않다. 아래 <표 18>은 성년후견제도법인후견지원사업의 개요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¹⁶⁾

발과 기타 권리옹호지원사업이 임의사업으로 있다. 지역생활지원사업의 개관은, 厚生勞動統計協會, 國民の福祉と介護の動向, Vol. 60 No.10(2013/2014), 106면 이하 참조.

14) 이 표는 주영하·정익중, 한일 공공후견사업에 관한 비교연구, 법과정책연구, 제16집 제1호 (2016), 181면에서 재인용.

15) 이에 대해서는, 주영하·정익중, 위 논문, 181면 참조.

16) 요코하마시의 성년후견제도법인후견지원사업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다른 지자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http://www.ne.jp/asahi/hama/tubasa/houjinkouken.html> 참조.

<표 18> 성년후견제도법인후견지원사업의 개요

1. 목적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 보좌, 보조(이하 후견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동시에 시민후견인의 활용도 포함한 법인후견의 활동을 지원하여, 장해자의 권리옹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1) 법인후견실시를 위한 연수

- ① 연수대상자: 법인후견실시단체, 법인후견의 실시를 예정하는 단체
- ② 연수내용 등: 시정촌은 각각의 지역의 실정에 따라 법인후견에 필요한 운영체제, 재원확보, 장해자등의 권리옹호, 후견감독인과의 연계방법 등, 시민후견인의 활용도 포함한 법인후견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윤리를 익힐 수 있는 내용으로 연수カリ큘럼을 작성한다.

(2) 법인후견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직체제의 구축

- ① 법인후견의 활용 등을 위한 지역의 실태파악
- ② 법인후견추진을 위한 검토회 등의 실시

(3) 법인후견의 적정한 활동을 위한 지원

- ① 변호사, 사법서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으로 하여금 법인후견단체가 어려운 사례를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함.

(4) 기타 법인후견을 수행할 사업소의 위치 지원 등, 법인후견의 호라동 추진에 관한 사업

3. 유의사항

(1)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복수의 시정촌이 연대하여 광역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의해 실시할 것

(2) 실시주체인 시정촌은 사회복지협의회나 NPO 법인 등 적절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한다.

(3) 연수수강에 관련된 교재비 등에 관하여는 수강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소결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인을 위한 후견심판사건에서 신청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종래 가족의 문제로 이해되어 왔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별달장애인법’을 제외하면 사회복지행정 관련 법률에서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의 복리증진에 책임이 있지만(지방자치법 제9

조 제2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과중한데, 기존 인력을 여기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민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심판사건에서의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회복지법에서 신청권을 인정하고 그 권한 행사의 방법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예산으로나 활동의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두드러진 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에서도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III. 지타 지역의 후견법인인 성년후견지원센터의 활동과 시사점

1. 지방자치단체와 성년후견지원센터의 관계

아이치현(愛知縣) 지타(知多)지역의 10개의 기초자치단체인 市와 町¹⁷⁾이 주체가 되어, 2008년 1월 NPO 법인인 지타지역성년후견센터를 설립하게 하여 법인후견, 성년후견에 관련된 상담 일체, 성년후견제도보급계발 사업 일체를 위탁하였다. NPO 법인에 위탁하는 대가로 위탁료로서 인건비,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위탁료는 10개 市와 町, 그리고 NPO법인인 지타지역성년후견센터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형식을 취한다. 2016년 10개 市·町이 부담할 부담금은 합계 4,500만엔으로 각 市·町의 인구와 각 市·町에서 수임한 후견사건을 감안하여 비율적으로 부담한다. 인구가 많은 半田市와 東海市가 각각 약 760만엔, 東浦町과 知多市가, 후견인 선임건수가 가장 많지만, 각각 약 458만엔, 620만엔을 부담한다. 후견서비스제공만이 아니라 상담과 성년후견제도보급계발까지 NPO 법인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표 19>는 지타지역 피후견인·피보좌인·피보조인 전체 현황이다.

17) 半田市, 常滑市, 東海市, 大府市, 知多市, 阿久比町, 東浦町, 南知多町, 美浜町, 武豊町이에 해당된다. 愛知縣東海市役所 神野規男, 愛知縣知多地域における成年後見利用促進事業の取組み, 제6회 全國権利擁護支援フォーラム 자료집(2015년 2월 14일), 참조.

성년후견제도 운영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 후견법인의 역할의 정립: 일본 지타(知多) 지역 모델의 시사점

<표 19> 지타지역 전체 피후견인의 장애유형

피후견 인유형	半田市	常滑市	東海市	大府市	知多市	阿久 比町	東浦町	南知 多町	美浜町	武豊町	합계
치매	152	173	303	135	207	53	246	41	49	82	1441
지적 장애	240	65	293	109	309	32	119	14	15	190	1386
정신 장애	136	24	90	34	162	51	168	13	11	66	755
기타	25	2	126	46	76	23	2	21	0	2	323
합계	553	264	812	324	754	159	535	89	75	340	3905

출처: NPO 法人 知多地域成年後見センタ 被後見人等 障害類型(2015년)

후견사건의 대상자유형은 후견이 1912건, 보좌가 1618건, 보조가 375건이라고 한다. 지타지역성년후견센터는 이들 피후견인 등에 대한 상담만이 아니라,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직접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타지역성년후견 센터의 후견 관련 업무실적은 다음 <표 20>과 같다.

<표 20> 후견업무실적

2016년 2.1.부터 2016.2.29. 기준

업무 건수	半田市	常滑市	東海市	大府市	知多市	阿久 比町	東浦町	南知 多町	美浜町	武豊町	합계
전화 업무	296	108	377	148	365	80	240	44	41	204	1903
내방 업무	7	6	24	4	45	2	6	1	0	1	96
방문 업무	244	150	409	170	337	75	287	44	34	130	1880
회의 업무	6	0	2	2	7	2	2	0	0	5	26
합계	553	264	812	324	754	159	535	89	75	340	3905

출처: NPO 法人 知多地域成年後見センタ 후견업무실적(2016년)

2.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지타지역 성년후견센터’의 활동

지타지역 성년후견센터는 특정비영리법인(NPO)의 명칭인데, 이 법인이 후견인, 보좌인,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 NPO 법인이 수임하는 후견 사안으로서는 ①성년후견인등을 수임할 친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3자 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한 사안, ②본인의 자산이 적어 보수를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직에게 제3자 후견인을 수임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한 사안, ③친족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본인이 학대를 받고 있는 등 대응에 곤란을 수반하는 사안이 상정되고 있다.¹⁸⁾

그러나 대상자가 될 고령자·장애인들이 공적 연금을 생활비용에 충당하지 않으면 안되며, 성년후견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영리법인은 수임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안심하고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에 의한 계속적인 재정원조를 받아 성년후견사업을 추진해 갈 법인후견조직이 필요하다.

그러한 배경에서 창설된 조직의 하나가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지타지역성년후견센터(이하 ‘지타지역 성년후견센터’라 한다)」이다.¹⁹⁾

(1) 지타지역 성년후견센터의 조직성립 과정

성년후견센터의 설치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의 범위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안심하고 그 마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상담·활용할 수 있는 성년후견센터의 존재가 불가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적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법인이어야 한다. 행정과 NPO 및 사회복지협의회의 제휴 없이 지역의 안전망은 뻗어나갈 수 없다.²⁰⁾

지타지역 성년후견센터는 어느 장애인의 자식을 둔 어머니가 여명 6개월의 암선고를 받고 남은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여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한 것을 계기로 성립된 법인이다. 한편으로 그 배경에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지역복지후원지타²¹⁾를 중심으로 하는 지타반도²²⁾ 내에서의 복지네트워크의 존재가

18) 앞의 보고서, 「知多地域成年後見センターに見る地域に根じた法人後見のあり方」, 5면.

19) 위 보고서, 5면.

20) 위 보고서, 1면.

있었다.²³⁾

행정과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 및 사회복지협의회가 제휴하여 성립된 것이 지타지역 성년후견센터이다. 지타지역 성년후견센터는 2008년도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공적 자금과 지원을 받아 성년후견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있다고 한다.²⁴⁾

(2) 조직구성원

센터설립 당초는半田사무소와 知多사무소에 각각 2명의 정직원이 배치되었다. 지타지역 후견센터의 직원체제는 2013년 3월 현재 직원 6명, 파트타임 직원 11명이 배치되어 있다.²⁵⁾

현재 지타지역 성년후견센터는 5市 5町으로부터 성년후견의 위탁업무를 행하며, ①상담, ②법인후견, ③보급계발 등 성년후견에 관한 사업을 행하고 있다.²⁶⁾ 지타지역 후견센터 사업개시 직후부터 많은 상담이 이루어졌으며,²⁷⁾ 센터의 법인후견 수임건수는 매년 증가하여²⁸⁾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인원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그래서 후견업무를 지원해 줄 법인후견지원원(지역생활지

21) 지타지역 성년후견센터 설립 이전부터 지적장애인의 법인후견을 실시하고 있었던 중간지원 NPO라고 할 수 있다.

22) 지타지역에는半田市, 東海市, 大府市, 知多市, 常滑市, 阿久比町, 武豊町, 美浜町, 南知多町, 東浦町의 5市 5町이 있다. 그런데 지타지역 성년후견센터에는半田市와 知多市의 2개소에 사무소를 갖추고 있다. 半田成年後見事務所는 阿久比町, 半田市, 武豊町, 美浜町, 南知多町의 1市 4町을 담당하고, 知多成年後見事務所는 東海市, 大府市, 知多市, 東浦町, 常滑市의 4市 1町을 담당하고 있다. 앞의 보고서, 「法人後見支援員養成モデル事業調査報告書」, 75면.

23) 앞의 보고서, 「知多地域成年後見センターに見る地域に根じた法人後見のあり方」, 1면.
24) 위 보고서, 1면.

25) 위 보고서, 6면.

26) 앞의 보고서, 「法人後見支援員養成モデル事業調査報告書」, 75면.

27) 지타지역 성년후견센터의 상담건수는, 2008년 1,821건, 2009년 3,642건, 2010년 3,171건, 2011년 4,903건이다. 앞의 보고서, 「知多地域成年後見センターに見る地域に根じた法人後見のあり方」, 22면.

28) 지타지역 성년후견센터의 법인후견 수임건수는, 2008년 20건(상담지원인 247명), 2009년 52건(상담지원인 320명), 2010년 86건(상담지원인 252명), 2011년 151건(상담지원인 393명), 2012년 211건이다. 앞의 보고서, 「法人後見支援員養成モデル事業調査報告書」, 5면, 28면; 위 보고서, 「知多地域成年後見センターに見る地域に根じた法人後見のあり方」, 22면; 특정非營利活動法人 知多地域成年後見センター, 「成年後見業務從事者のための研修プログラムとその手引き」, 2014, 1면.

원원)을²⁹⁾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성년후견에 관한 사회에의 이해확산과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느껴 조성금 등을 활용한 다양한 연수를 개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에의 보급계발을 목적으로 한 「성년후견후원자 양성강좌」와 성년후견업무에 제휴할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한 「성년후견전문지원원 양성연수」,³⁰⁾ 나아가 센터직원만으로는 모두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돌봄 등을 행할 지역생활지원원을 양성하는 「지역생활지원원 양성강좌」 사업 등을 계속하여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³¹⁾

(3) 지역생활지원원 양성프로그램

센터설립초기부터 상담건수는 1개월에 200건을 넘는 달도 있었으며, 항상 인원부족상태였다. 그 때문에 지역복지후원지타에서 활동보조를 해 온 구성원들에게 부탁하여 지원을 받아 왔다. 그 구성원들이 지금 ‘지역생활지원원’으로 활약해 오고 있다. 설립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12년 상담과 수임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였다. 정직원도 늘어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로 정직원의 증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생활지원원의 확보는 중요 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³²⁾

그 때문에 지역복지후원지타에서 행해오던 지역주민을 활용한 인재양성 스타일을 참고한 지타지역 성년후견센터의 지역생활지원원 양성프로그램을 확립하여 양성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³³⁾

29) 지타지역 성년후견센터에서는 법인후견지원원을 지역생활지원원이라고 부른다.

30) 지역에서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에서의 후견업무 및 그 보급계발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매년 성년후견제도에 관련 있는 전문지원원 양성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14년에 행해진 성년후견전문지원원 양성연수에서는, 지타시 복활동센터에서 사례검토·발표를 중심으로 성년후견에 관한 전문가의 강평과 의견 교환·신청서의 작성 연습을 하고, 마지막날에는 연수생에 의한 미래 디자인 기법을 사용한 사례검토와 참가자의 교류로 행해졌다. 特定非營利活動法人 知多地域成年後見センター, 「第6回 成年後見制度 専門支援員 養成研修報告書」, 2015, 4면.

31) 앞의 보고서, 「知多地域成年後見センターに見る地域に根じた法人後見のあり方」, 13면; 앞의 보고서, 「成年後見業務從事者のための研修プログラムとその手引き」, 1면.

32) 特定非營利活動法人 知多地域成年後見センター, 「権利擁護のための人材育成·連携·運用 モデル開発事業 報告書」, 2015, 1면.

33) 성년후견제도의 보급계발과 이해촉진을 목적으로 매년 6회의 강좌를 지타반도 내의 2개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다. 앞의 보고서, 「法人後見支援員養成モデル事業調査報告書」, 13면, 76면.

각 市町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의한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도 성년후견제도와 나란히 권리옹호를 위한 서비스로 이용되고 있다. 일상생활자립사업은 일상생활에 불안을 품고 있는 치매 고령자,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으로 자신 한사람으로 계약 등의 판단을 하는 것이 불안한 분들과 입출금, 서류관리 등을 함께 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계약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타지역 성년후견센터에서는 당 센터의 「성년후견업무에 제휴할 지원원」과 지타 반도 5市5町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시하는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의 「생활지원원」을 각 사회복지협의회와 제휴하여 함께 인재를 육성하고 운용을 하고 있다.³⁴⁾ 함께 조합한 이유는, 양 지원원 모두 정기적인 본인의 돌봄과 금전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동내용의 공통성·유사성이 있다는 것과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을 이용해 온 분들이 언젠가는 성년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서 이 제휴는 한층 지역권리옹호의 추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³⁵⁾

지역생활지원원은 성년후견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육성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뿌리를 둔 일상생활 속에서도 돌보는 사람이 늘어나 피후견인을 비롯하여 지역 사람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계발강좌로서 개최하고 있는 성년후견후원자 연수에 참가하여 성년후견에 관한 기초지식을 배운다. 성년후견후원자 연수 수료자 중에서 지역생활지원원 양성프로그램에 등록 희망의사를 확인한다. 등록자에게는 지역생활지원원 양성프로그램의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관하여 설명을 한 후 다시 한번 참가의향을 확인한다. 지역생활지원원 양성프로그램의 수료자는 순차적으로 지역생활지원원으로서 후견업무의 지원을 해 나간다.³⁶⁾

(4) 센터활동 내용과 성과

지타지역 성년후견센터가 최근 몇 년간 상담한 상담 대상자별 상담 건수는 다음과 같다. 2008년에 치매 등 고령자 1,151건(61%), 지적 장애인 256건, 정신장애인 385건, 기타 99건, 2009년 치매 등 고령자 2,134건(58%), 지적 장애인

34) 앞의 보고서, 「成年後見業務從事者のための研修プログラムとその手引き」, 1면.

35) 위 보고서, 1면.

36) 앞의 보고서, 「法人後見支援員養成モデル事業調査報告書」, 78면.

744건, 정신장애인 724건, 기타 70건, 2010년 치매등 고령자 1,986건(63%), 지적 장애인 448건, 정신장애인 539건, 기타 198건, 2011년 치매 등 고령자 2,984건(61%), 지적 장애인 1,164건, 정신장애인 713건, 기타 42건이다.³⁷⁾

지타지역 성년후견센터가 2008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한 후견인 수임건수는 치매 등 고령자 35건, 지적 장애인 7건, 정신장애인 12건, 기타 2건으로 56건인데, 이는 전체후견인수임 건수 177건 중 32%에 해당한다.³⁸⁾

지타지역 후견센터가 2012년 3월 현재 수임한 후견등 대상자별 건수는, 치매 고령자 90건(60%), 지적 장애인 32건(21%), 정신장애인 29건(19%)이다.³⁹⁾

지타지역 성년후견센터가 2012년 3월 현재 수임한 유형별 후견 등 수임 건수는 후견 97건(64%), 보좌 46건(31%), 보조 8건(5%)이다.⁴⁰⁾

지타지역 성년후견센터가 2012년 3월 현재 수임한 생활 상황 별 수임 건수는, 재택 40건(26%), 병원·시설 등 111건(74%)이다.⁴¹⁾

3. 소결: 시사점

5개 시정촌이 연합하여 1개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인 ‘지타지역 성년후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성년후견지원사업을 대체하도록 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의 취지가 후견활동별로 후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저렴한 보수로 열성적으로 일할 후견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후견인을 양성하는 것이라면, 지타지역의 성년후견법인지원사업은 후견법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여 그 후견법인이 후견수요가 있는 저소득층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개의 후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후견법인의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것이다. 후견법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경우, 후견서비스는 후견법인의 직원이 시민들로 구성된 전문지원인의 지원을 받아 제공한다. 그 점에서 후견법

37) 위 보고서, 24면.

38) 위 보고서, 26면.

39) 위 보고서, 28면.

40) 위 보고서, 29면.

41) 위 보고서, 29면.

인이 제공하는 후견서비스의 질은 개인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높을 수 있고, 또 안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이 여러 건의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성의 축적도 가능해진다. 또한 후견법인은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에게는 별도의 보수를 받기 때문에 정부 재정지원만이 아니라 자체 수입을 보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후견이 필요한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공후견사업에 있어서 후견법인 중심으로 공공후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되, 후견법인의 경상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 개의 NPO 법인이 치매, 지적장애, 정신장애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공공후견사업에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일 것이다.

IV. 결론

민법 개정으로 후견 심판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권한을 부여한 취지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일본의 성년후견 제도이용지원사업과 성년후견법인지원사업과 그 근거 법률, 나아가 지타지역의 NPO 법인인 성년후견센터의 활동이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민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심판 사건에서 신청권한을 부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임무와 권한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절차에 개입할 수는 없다. 후견심판청구 역시 공권력 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행사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는 근거법률을 관련 행정법규에서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일본처럼 치매환자, 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 관련된 사회복지 관계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입법해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견심판청구권한 행사가 현실화될 것이다. 둘째, 후견 사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입하여 지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후견 관련 일체의 사건을 담당할 후견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진행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사업

에서처럼 시민후견인 중심의 후견서비스 제공으로는 경험축적을 통한 전문성 제고, 사업의 안전성, 책임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셋째, 일본에서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여하기 위해 치매환자, 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 관련된 개별 사회복지 관계법에 관련 규정을 두더라도, 후견법인을 통한 후견 관련 지원사업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행의 발달장애인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법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표 21> 발달장애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제안

현행 발달장애인법 등	개정사안
<p>발달장애인법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p> <p>① 생략</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발달장애인법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p> <p>① 좌동</p> <p>②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선정된 후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③ 삭제</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p> <p>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법인의 선정 요건, 후견법인의 경상비 등의 지원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p>
발달장애인법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	발달장애인법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

<p>터의 임무)</p> <p>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6. 생략</p> <p>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p> <p>8~9. 생략</p> <p>② 지역발달장애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7. 생략</p> <p>8.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 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p> <p>9. ~10. 생략</p>	<p>터의 임무)</p> <p>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6. 좌동</p> <p>7. 제9조에 따른 후견법인에 대한 지원</p> <p>8~9. 좌동</p> <p>② 지역발달장애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7. 좌동</p> <p>8. 제9조에 따라 선정된 후견법인에 대한 자문 및 지원</p> <p>9. ~10. 좌동</p>
<p>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3조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p> <p>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p> <p>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 등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2. 후견법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견기간 동안 후견법인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사람</p>	<p>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3조 삭제</p>
<p>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2조(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p> <p>「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p>	<p>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2조(후견법인의 선정기준)</p> <p>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선정할 후견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후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 직원의 확보</p>

<p>한다)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후견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p>	<p>2. 후견서비스 업무를 지원해 줄 의지와 역량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계획성 있게 확보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비 3.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비 ② 보건복지부는 후견법인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후견 관련 수요,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공모로 제1항의 요건을 갖춘 후견법인을 선정할 수 있다.</p>
<p>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3조(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다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친족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에 따른 후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3. 영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비용 4. 후견법인이 지원과 감독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과 감독에 드는 비용 	<p>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3조(후견법인에 대한 경상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후견법인에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후견법인 소속 직원의 인건비. 다만 인건비는 예상되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 관련 사건의 연간 전수, 후견서비스 제공 전수, 담당하는 지역의 성인 발달장애인의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 후견법인의 업무를 지원할 시민지원인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및 시민지원인의 활동경비. 시민지원인에게 지급할 활동경비의 기준은 제1호 단서의 기준에 따른다. 3.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제도 홍보활동 경비. ②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을 지원하는 사업은 성년후견이 개시된 사안을 제외한다. 후견지원사업의 경비지원은 개별 발달장애인 별로 후견심판에 따른 후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참 고 문 헌

- 제철웅·김원태·이용표·이세희, “후견법인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입법적 제안,” 「가족법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6.
- 주영하·정익중, “한일 공공후견사업에 관한 비교연구,” 「법과정책연구」, 제16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6.
- 社會福祉士養成講座編輯委員會, 「權利擁護と成年後見制度」, 第4版, 中央法規出版, 2014.
- 社會福祉士養成講座編輯委員會, 「高齢者に對する支援と介護保険制度」, 第5版, 中央法規出版, 2016.
- 山口理恵子, “成年後見制度利用支援事業における運用上の課題,” 京都光華女子大學研究紀要47, 京都光華女子大學, 2009.
- 愛知縣東海市役所 神野規男, 「愛知縣知多地域における成年後見利用促進事業の取組み」, 제6회 全國權利擁護支援フォーラム 자료집, 2015.
- 特定非營利活動法人 知多地域成年後見センター, 「権利擁護のための人材育成・連携・運用モデル開発事業 報告書」, 2015.
- 特定非營利活動法人 知多地域成年後見センター, 「法人後見支援員養成モデル事業調査報告書」, 2012.
- 特定非營利活動法人 知多地域成年後見センター, 「成年後見業務從事者のための研修プログラムとその手引き」, 2014.
- 特定非營利活動法人 知多地域成年後見センター, 「第6回 成年後見制度 専門支援員 養成研修報告書」, 2015.
- 特定非營利活動法人 知多地域成年後見センター, 「知多地域成年後見センターに見る地域に根じた法人後見のあり方」, 2013.
- 厚生勞動統計協會, 「國民の福祉と介護の動向」, Vol. 60 No.10(2013/2014).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요코하마 성년후견 쓰바사(よこはま成年後見つばさ),
<http://www.ne.jp/asahi/hama/tubasa/houjinkouken.html>.
- http://www.cao.go.jp/consumer/iinkai/2013/118/doc/118_130423_shiryou3.pdf

<국문초록>

가족기능의 약화와 더불어 의사결정능력이 쇠퇴한 성인이나 아동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심판 신청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을 제외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후견신청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청구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는 곧 사회복지행정 관련 법률에서 후견심판청구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관련 법이 사회복지 행정법률에는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논문은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 특히 치타시의 성년후견제도법인후견지원사업을 검토하면서, 일본처럼 치매환자, 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 관련된 사회복지 관계법에서 후견제도이용지원에 관한 내용이 법제화되어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견심판청구권한 행사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 관련 심판청구권을 보유하더라도, 복지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후견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 논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 후견법인, 공공후견인, 시민후견인

The Defining of the Roles of Local Authorities and Guardianship Cooperations in the Operation of the Guardianship System: Lessons from a Jita Model in Japan

Je, Cheol-ung*, Kim, Won-Tae**

The Korean Civil Code, revised by law no. 10429, makes local authorities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to family courts for the appointment of adult guardians. The legislative purpose is that local authorities shall engage in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adults, for which family members have been responsible, but which has failed, due to the protection function of families being weakened. Despite such a purpose, local authorities have still been reluctant to be involved in the application for the appointment of adult guardians, the main reason of which is the lack of legal provisions relevant to local authorities' function and tasks. That being sai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the Assistanc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hereinafte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enacted in 2014, provides for the responsibility of local authorities to assis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resort to guardianship services. This paper deals with the issue of how local authorities efficiently exercise their power to discharge the said responsibiliti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conducted a research on how a guardianship corporation working in Jita area in Japan works to provide guardianship service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with dementia. After comparison of provisions on adult guardianship corporations of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with the guardianship corporation in Jita, this paper argues that guardianship corporations would be more suitable to provide for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at for local authorities to function more efficiently for the provision of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to vulnerable adults it is necessary to enact legal provisions relevant to guardianship corporations

*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social welfare acts. Then this paper proposes for the revision of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to place guardianship corporations at the center of the provision of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Key Words : Adult Guardianship, Public Assistance for the Use of
Guardianship Service, Guardianship Corporation,
Public Guardian Service, Citizen Guardian